여성인권의 현주소*

남 은 주**

1. 들어가며

인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증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여성운동은 운동의 역사 자체가 '여성인권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도 사)대구여성회를 소개하는 가장 간단한 말로 여성인권단체라는 말을 사용한다. 1988년에 창립한 대구여성회 활동이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과의 조우에서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는 여성인권운동의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안동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변00씨 사건과 대명1동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전국 대책위원회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하며 대구여성회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성폭력특별법 제정 단체로 활동했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여성운동의 눈부신 성과에 수많은 역공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양성평등을 넘어 '여성상위'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인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남녀평등지수국가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117위 였다. 최근 끔찍한 성폭력 사건발생이 빈번했던인도는 114위 였고, 캄보디아(108위), 가나(101위), 라이베리아(111위) 등 동남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순위는 아래이다. 이 순위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과법제도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성차별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에 대한 결과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듯

^{*} 투고일자 : 2014. 11. 28 심사일자 : 2014. 12. 15 게재확정일자 : 2014. 12.19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여성의 지위와 평등은 체감하는 것과 국제적인 수치에 차이가 크다.

2. 인권과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인권의 의미를 살펴보자.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모든 권리와 자유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국가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혹은 다른 지위와는 상관없이 부여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의 개념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엄청난 사망자 숫자에 공멸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합의하여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1조는 발표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문구는 세계인권선언 작성 당시 처음에는 '형제처럼'(like brother)이었다가, 유엔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형제애의 정신'(in the spirit of brotherhood)으로 바뀌었다고 한다.1) 한국에서는 이를 '동료애'로 번역하고 있다. 인권 개념을 논의할 때 프랑스 혁명 당시 논의되었던 혁명정신에 '여성'이 빠져 있듯이 여성은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였다. 1791년 프랑스 혁명 선언을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바꾸어(1791) 프랑스 혁명에서 주체가 '남성 브르주아'임을 비판했던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단두대에 설 권리가 있다면 의회에서 연설할 권리도 남성과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하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여성은 투쟁할 때는 함께 하는 동지였으나 투쟁이 끝나면 '여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었다.

우리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게 된다. 그 입장은 말하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살펴본 시민이나 인권의 시작으로 이야기되는 프랑스 혁명이나 인권의 개념을 논의하는 입장은 '비장애인인 백인남성중심의 가부장제'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의 인권이라는 분류가 생겨난

^{1)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중 '여성'과 '인간'을 넘어(정희진) P167

다. 여성인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남성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미 인권이라는 의미 속에 '남성'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의 범주 속에 여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의 개념과 분야에 대해서 논의 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남성'이다.

3. 여성인권을 규정한 3가지 법

198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의 여성운동은 법제정운동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중에서도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매매특별법(2004)을 인권3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특별법의 개념과 여성인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폭력

성폭력은 (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률은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특별법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성폭력은 가부장제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성폭력은 수 천년간 지역, 계급, 인종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있어 왔다. 그리하여 인간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력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예방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본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거리를 걸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 얼른 뒤돌아 볼 수 있느냐'고 여성의 대답은 대부분 돌아보기 보다는 짐을 움켜쥐고 빨리 걸어 그 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대답을 언뜻 이해하지 못한다. 뒤를 돌아보고 누구인지 확인하고 만약 공격한다면 싸우면 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여성들은 이미 위축되어 있다.

여성폭력에 대해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죄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성폭

력 피해자는 '더럽혀진 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정조는 여성의 것이 아니라 여성이 속한 '가족 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히려부끄러워하고 감추었으며 가족도 피해를 감추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모두 변한 것은 아니다. 이에 여성운동은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로 이슈화 하고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강제로 삽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법률적인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며 인식의 확장을 위해 성폭력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것임을 주장해 왔다. 이렇게성기중심적이고 신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인 거세를 논의하는 논쟁에서 그 뿌리 깊은 인식을 드러낸다. 성폭력의 의미를 성기를 중심으로 환원하고 성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강간 피해 외에는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인식이 숨어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대표적인 것은 '피해자 유발론'이다.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할 여지를 주었거나 심지어 가해자를 유혹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주변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 되어 만연해 있다. 각 학교의 보건실 앞에 있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안내문에는 어김없이 '일찍 집에 들어갈 것과 단정한 옷차림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도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성폭력예방교육에서는 '안돼요, 싫어요'를 외치게 하고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여름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등교하지 않도록 하라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 아동의 노출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아동도 성적대상이 될 수 있고 노출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어떤 옷차림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100% 가해자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이런 보건실의 안내문과 성폭력예방 교육내용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못하도록 한다. 더욱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를 도와주기 보다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여성운동에서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재개념화 하고 난 뒤 새로운

²⁾ 필자의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는 '끈만 달린 상의', '지나치게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등교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문제가 대두되었다. 피해자의 '동의'여부가 성폭력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고, 제대로 된 동의가 아닌 경우에도 '동의'로 해석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여성이 성적인 제안에 대해 거절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은 여성이 거절한다 해도 그 의사는 존중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표현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여성의 관점이 아닌 남성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

성폭력에 있어 큰 변화는 2013년 6월 19일 부터 폐지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였다. 성폭력이 친고죄인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은 범죄 피해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며 '정조에 관한문제'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제297조의2)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1) 성폭력 발생현황

성폭력은 그 특성상 신고나 상담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가, 조사 방법 등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다. 따라서 통계의 결과치는 조사범위의 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청,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통계>, 2007년, 2010년,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된 <성폭력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비교, 활용하여 본 성폭력 발생 현황은 신고건수와 신고비율,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모두 증가추세이다. 2008년 신고 15,970건, 검거 14,415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신고 22,310건, 검거 19,774건으로 전반적으로 성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와 검거의 건수가 증가하였다.

^{3) 「}여성주의 학교 '간다'」여성주의 인식론, 섹슈얼리티-자기결정의 철학 한 채윤 p65 재인용

구분 신고건수 신고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8년 15.970 14.415 15.235 2009년 15,693 31.9 14,492 14,630 37 2010년 18,258 16,125 17,141 2011년 19,498 39.2 16,404 17,492 2012년 19,670 39.3 16,630 18,012 22,310 19,774 20.375 44.4 강간 5,753 11.5 5,481 5,856 2013년 유사강간 132 0.3 122 136 강제추행 14,778 29.4 12,525 12,496 기타강간·강제추행등 1,647 3.3 1,646 1,887

〈표 1〉 성폭력 신고 및 검거 현황4)

자료 : 2008년 자료는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와 검찰청 범죄통계(2013). 통계량이 알치하지 않는 경우 경찰청 범죄통계(2013)를 따름

성폭력 범죄의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아졌고, 사회문화의 변화, 반성폭력운동의 활성화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던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 현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은 여러상담소에서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피해자 연령에서 성인의 비율이 70~95%를 차지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담현황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43(66.5)	204(14.4)	114(8.0)	43(3.0)	34(2.3)	1,338(94.4)
남	47(3.3)	19(1.3)	8(0.6)	5(0.4)	1(0.1)	80(5.6)
총계	990(69.8)	223(15.7)	122(8.6)	48(3.4)	35(2.4)	1,418(100)

통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는 약 90%이상이 여성이 피해자이며, 약60~85%이 직장동료, 이웃,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이며, 약 10%이내만 신고, 보고되는 피해의 특성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 특히 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4)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p262 재인용

친족에 의해,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성인은 직장 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아는 사람인 것이다.

〈표 3〉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건(%)>

		이는 사람 1,205(85.0)													
송	친족, 2 189(직장	친밀 한	인터 넷	동네 사람	서비 스 제공	학교	유치 원/학	주변 인의	소개로 만난	기타	모르 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 척		관계	^	710	자		원	지인	사람				
계	110 (7.8)	79 (5.6)	306 (21.6)	124 (8.7)	55 (3.9)	75 (5.3)	50 (3.5)	176 (12.4)	69 (4.9)	135 (9.5)	10 (0.7)	16 (1.1)	115 (8.1)	98 (6.9)	1,418 (100.0)
성인 (59세-20	19	31	295	109	40	43	41	100	28	109	8	13	91	63	990
세)	(1.9)	(3.1)	(29.8)	(11.0)	(4.0)	(4.3)	(4.1)	(10.1)	(2.8)	(11.0)	(0.8)	(1.3)	(9.2)	(6.4)	100.0
청소년 (19세-14	29	8	6	11	10	15	5	62	22	15	2	1	13	24	223
세)	(13.0)	(3.6)	(2.7)	(4.9)	(4.5)	(6.7)	(2.2)	(27.8)	(9.9)	(6.7)	(0.9)	(0.4)	(5.8)	(10.8)	(100.0)
어린이	40	30	0	0	2	10	1	11	8	9	0	1	7	3	122
(13세-8세)	(32.8)	(24.6)	(0.0)	(0.0)	(1.6)	(8.2)	(0.8)	(9.0)	(6.6)	(7.4)	(0.0)	(0.8)	(5.7)	(2.5)	(100.0)
유아	16	8	0	0	0	7	1	2	10	0	0	0	3	1	48
(7세 이하)	(33.3)	(16.7)	(0.0)	(0.0)	(0.0)	(14.6)	(2.1)	(4.2)	(20.8)	(0.0)	(0.0)	(0.0)	(6.3)	(2.1)	(100.0)
-D11	6	2	5	4	3	0	2	1	1	2	0	1	1	7	35
미상	(17.1)	(5.7)	(14.3)	(11.4)	(8.6)	(0.0)	(5.7)	(2.9)	(2.9)	(5.7)	(0.0)	(2.9)	(2.9)	(20.0)	(100.0)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

(2) 정부의 대책

정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근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실행 중인데 정부의 4대악에 성폭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폭력 부문에 있어서는 1차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2012.07/08),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06)까지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 대책들은 당시 발생한 사건의 정부 대응책으로 발표되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효과성을 전망하며 발표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대응에 가깝다.대부분의 내용이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사회 치안 관리, 안전 통제에 치중하는 정책이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2008),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취업제한(2010), 성충동 약물치료(2011) 등은 인권의 측면에서 문제제기되었거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제도들도 있었다.특히 전자발찌 제도는 강력범죄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5), 화학적 거세로 불리우는 가해자에게 약물을투여하는 방법은 성폭력을 가해자의 성욕해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고, 비용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2003년 117개소의 성폭력 상담소, 12개소의 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하던 시설 개수가 2014년 173개소(국비지원 96개소), 27개로 확대되었고 전국에 원스톱 지원센터는 15개소가 설치(2013)되어 있고, 이들 센터의 전체 지원 실적 중 72%(2012년)가 성폭력 피해이다. 아동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2004년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시작으로 2013년 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아동성폭력피해와 기존의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전국에 7개소 설치되어 있다.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전국에 개설되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담의료기관은 2001년 7개소에서 2013년 330개소로 확대지정되었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전담사법경찰관제(2006년), 전담수사팀(경찰, 2013년 신설), 전담수사팀 검사, 전담재판부(2008년 신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였다. 2010년 4월 초중고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2011년 3월 보육시설 및 유치원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었으며, 2013년 6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이의무화되었다. 201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폭력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가 제도화 되었다.

⁵⁾ 전자발찌 부착자는 시행 첫 해 180명 남짓에서, 지금은 2,070명이 넘지만 위치추적기를 따로 휴대 해야하는 전자발찌 장치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134건으로 3년 새 6배로 늘었다. 재범률을 보면 성폭행범의 재범은 4년 만에 열 배로 폭증했다. 이슈엔 뉴스 (2014, 11, 21)

2)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외에도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도 3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오랜 동안 피해자가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오히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참다못해 남편을 살해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아버지의 폭력을 보다 못해 자식이 가해자를 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며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이다.

매년 한국여성의 전화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하여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를 발표한다. 2013년 발표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최소 123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5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숫자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예상된다. 아직까지 범죄 통계에 있어 가정폭력은 따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중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91.6%나 급증하였다. 2013년 발생한 가정폭력을 사안별로 보면 아내 학대가 1만1천8백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 학대가 8백건, 노인 학대 6백건, 자녀 학대 4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 가정폭력 발생현황

1997년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이후 2008년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011년 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되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의 변화

가 있었다.

그러나 〈표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현황(경찰 단계)〉를 보면 경찰의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가해자의 구속건수(2012년 73건)는 불구속건수(2012년 8,984건)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건수도 하락 추세에 있다. 〈표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에서도 역시 2012년 전체 처리된 사건 중 불기소되는 경우가 63.6%에 이르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19.9%가량, 기소되는 경우는 14.9%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표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법원단계)〉을 보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011년 불처분이 974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볼 때 가정폭력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조치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국가개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6)

〈표 5〉 가정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경찰 단계)

단위: 건, 명

성도	발생건수 연도 (기기기수)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선도	선모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2004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2005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2006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2007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2008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2009	11,025	12,493	87	12,064	342	657	756
2010	7,359	7,992	60	7,719	213	425	450
2011	6,848	7,272	51	6,925	296	336	341
2012	8,762	9,345	73	8,984	288	451	494

출처 : 2013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6) 「&#}x27;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p251~252 재인용

〈표 6〉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연도	총접수		기소		가정보호	불기소			소년부
선도	인원	계	구공판	구약식	사건 송치	계	기소유예	기타	송치
2004	17,373	2,429 (14.0)	463 (2.7)	1,966 (11.3)	5,218 (30.0)	9,394 (54.1)	4,756 (27.4)	4,638 (26.7)	72 (0.4)
2005	15,545	2,161 (13.9)	361 (2.3)	1,800 (11.6)	4,475 (28.8)	8,712 (56.0)	4,368 (28.1)	4,344 (27.9)	36 (0.2)
2006	13,576	1,972 (14.5)	315 (2.3)	1,657 (12.2)	4,197 (30.9)	7,230 (53.3)	3,449 (25.4)	3,781 (27.9)	33 (0.2)
2007	12,782	1,757 (13.7)	265 (2.1)	1,492 (11.7)	4,735 (37.0)	6,241 (48.8)	2,847 (22.3)	3,394 (26.6)	42 (0.3)
2008	13,334	1,841 (13.8)	354 (2.7)	1,487 (11.2)	4,833 (36.2)	6,549 (49.1)	2,593 (19.4)	3,956 (29.7)	12 (0.1)
2009	12,132	1,262 (10.4)	266 (2.2)	996 (8.2)	4,579 (37.7)	6,215 (51.2)	2,197 (18.1)	4,018 (33.1)	17 (0.1)
2010	5,185	577 (11.1)	112 (2.2)	465 (9.0)	1,908 (36.8)	2,715 (52.4)	918 (17.7)	17,97 (34.7)	2 (0.0)
2011	2,939	529 (18.0)	94 (3.2)	435 (14.8)	384 (13.1)	1,997 (67.9)	545 (18.5)	1,452 (49.4)	4 (0.1)
2012	3,154	469 (14.9)	116 (3.7)	353 (11.2)	629 (19.9)	2,006 (63.6)	493 (15.6)	1,513 (48.0)	6 (0.2)

출처 : 2013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 정부의 대책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총 1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건전한 가정육성'이라는 기존의 입법목적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도입하고 개정되어왔다. 2013년 7월에 개정된 내용 중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현장 출동 시 시설 종사자를 동행'하도록 한 것은 종사자의 신변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를 방해한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피해자를 보복폭행의 위험에 처하게 한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 이후 12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02년에는 목적 조항의 "건강한 가정을 육성"을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로 개정하였다. 2007년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도입

^{7) &}quot;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행위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전문상담소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하면서 기소유예처

되었는데 이는 검사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들은 더욱 이 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이후 2011년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 신설되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가정폭력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정부는 2011년 5월과 2013년 6월에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는 2012년 기준 228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66개소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2011년부터 (10세 이상 남아)자녀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시작되어서 2011년에 8개소, 2012년에는 5개소가 추가설치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경우, 1998년 1월 위기여성 상담특수전화 1366 운영을 개시하였고 2001년부터 시·도별 1개소 설치·운영하도록 전환되었으며 2012년 9월 중앙센터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현재 전국에 총 1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제도화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예방교육 이수기관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상에 이수 실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성매매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인 성매매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여성문제의 집약체이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많은 이들의 목숨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성매매가 여성운 동은 물론이고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8)과 개복동 화재의 사건 이후이다. 성폭력과 감금, 폭언과 폭행, 선불금과 사채로 얼룩진 성매매 현장은 일제시대 부터 존재해 오던 집창촌과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성업하고 있는

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20대 여성 5명이 희생되었다.

^{9) 2002}년 1월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여자 종업원 14명과 지배인 1명 등 15명이 숨진 사고이다.

성매매업소, 단속을 피해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종성매매업소까지 성산업의 사슬로 이어져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성매매 알선업소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업소는 금융위기와미국발 경제위기를 거치며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룸살롱처럼 유흥시설을 설치하고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음주가무가 허용되는 업태인 유흥주점은 2004년 2만9857개에서 2009년 3만466개로 609개(2.0%) 늘어 대조를 보인다.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지만 유흥종사자 고용이 불법인 '단란주점'은 2004년 1만 8,030개에서 2009년 1만 5,700개로 2,330개(12.9%) 감소했다. 일부 단란주점 업자들이 유흥주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10)

이러한 성매매는 국제적으로 성매매 관련정책과 인신매매 범죄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연구진이 2013년 1월 국제학술지 <세계개발>에 기고한 논문 '성매매 합법화로 인신매매가 증가하는가?'에 따르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오히려 불법적 인신매매의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회 보고서(2014년)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2012년 기소된 인신매매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신매매범의 4분의 3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성착취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성매매, 성 착취, 인신매매 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 연계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가 성매매 수요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성매매 시장의 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약 4천만 내지 4천2백만 명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가 13~25세 사이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4:6)11)

(1) 성매매의 현황

전체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성매매관련 업소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성매매 알선과 영업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결지역은 줄어들고 있으나 집결지의 여성수와 집결지의 업소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2013}년 대구여성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성매매여성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 조와 여성인권의 실태'신박진영 p89:21~28

^{11)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p242 재인용

구분(추정치)	2002년	2007년	2010년	2013년
성매매 여성 수	33만	27만	14만 2,000	13만~
성구매자	성구매자 16,884만명		1일 평균 집결지4.9명	1일 평균 집결지5.3명
집결지 지역	69곳	39곳	45곳	44곳
집결지 여성수	집결지 여성수 9,092명		4,917명	5,103명(2010 년 대비 3.8%증가)
집결지 업소수	2,938개	1,443개	1,806	1,858
산업형 (겸업형태)	57,938개	44,804개	전국 16개 시도 2000개 표본 35,926개	전국16개 시도 1,053개 표본 148,100개
성산업 규모	7개 업종 업소에서 약 16조 5천억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의 연간 매출액 1조 8 천억원 기타 비업소형 까지 포함 총 24조원 규모로 추정(GDP의 44.4%에 해당	전국의 성매 매 업소는 4 만6천여곳 거 래 액 수 는 약 14조 950 원	전체 성매매산 업의 규모는 총 6.86조원이고 이는 국내총생 산의 약0.65% 를 차지하는 액 수이다.	전체 성산업 규모는 추정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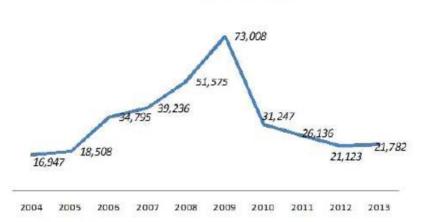
〈표 7〉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 자료

출처 : 2002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궈원), 2007년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실태조사(서울대여성연구소),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서 재구성함. / 참고 : 실태조 사자료는 국가 미승인 통계 자료임

성매매 단속과 검거인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장에서 보면 단속은 집결지는 제외하고 신변종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검거인원을 보면 2009년~2013년 8월까지 161,389명이고 이중 구속된 인원은 1,237명이다. 이에 구속율은 0.89%로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년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전프			구속(명)	비율(%)	불구속(명)	비율(%)			
2009	25,480	71,953	388	0.54	71,565	99.46			
2010	9,583	28,244	216	0.76	28,028	99.24			
2011	7,241	26,138	243	0.93	25,895	99.07			
2012	7,598	21,107	244	1.16	20,863	98.84			
2013. 8월	5,533	13,947	146	1.05	13,801	98.95			
총계	55,435	161,389	1,237	0.89	160,152	99.11			

〈표 8〉 성매매 관련 단속현황(2009~2013.8)



<그림> 성매매사범 검거인원

출처 : 경찰청 국회보고자료 (2013년)

(2) 정부의 대책

정부는 2004년 법제정 이후 부터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여성가족부 차 관 주재, 17개 부처 참여)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 처벌, 알선 등 관계자 행정처분, 신·변 종 업소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 행정 집행력을 강화해왔다.

추진점검단은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2011년)하고, 성구매자재범방지(존스쿨) 교육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 하였다. 2013년에는 청소년·장애인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하여 초범자라도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처벌을 강화하였고, 2014년 부터는 해외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요건이 확대되었고 성매매알선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성매매알선유흥업소의 영업장 폐쇄기준을 기존의 1년간 3회 위반에서 3년간 2회 위반으로 강화되었다.

2004년 1월 29일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입법과정에서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에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명시해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전국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한국여 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현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사업 중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주요사업이 위탁/수탁사업이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초창기 성매매정책을 기획하던 권익기획과에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권익지원과로 축소되었고, 성매매관련 중앙의 업무가 전형적인 민간이양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4.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제언

1) 성폭력 분야

법과 정책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이 의제화 되어야 한다. 아동폭력과 심각한 피해가 있는 강간 피해 등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은 사건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정책이 제안되지만 일상에서의 성폭력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폭력 사건이라 함은 흉악한 사건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피소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자세한 법률적 지식 없이 사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성폭력 범죄의 특징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육하원칙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으면 진술을 의심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자체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또한 수사과정이 힘들어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서 '꽃뱀'으로 의심받게 된다. 수사과정 전체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임을 의심받는 지점들을 지나게 된다. 이때 전형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 한순간에 무고죄의 피의자가 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피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수사 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심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2차 피해이다. 따라서 무고인지가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 등 법적 대리인이나 조력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등 무고죄 처리에 있어 예외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12)

2) 가정폭력 분야

가정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효성은 의구심이 든다. 현행 가정폭력방지

^{12)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p289 재인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의 보호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금까지의 시행결과,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 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범죄자 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검찰 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가해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있는데 이제 명시적인 처벌을 먼저하고 교정과 치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정폭력범죄자 체포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한순간에 일으키는 문제라는 개인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범죄이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은 신고도 잘 하지 못한다.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고,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른 폭력과도 깊은 관계를 보이는 사회범죄이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체포우선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3) 성매매 분야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을 구매하는 성매수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수가 불법이고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된다는 각인이 있어야 성구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성구매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성매매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성매매가 '걸리면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성매매는 이익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형태와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의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성산업의 구조에 '알선업자'들이 있다. 성매매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시행된 법에서는 약했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주체도 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청소년' 들이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녀들이 스스로 채팅을 하고 성매매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성매매사범으로 수사 받고, 매수범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인신매매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2013년 법무부는 형법의 약취, 유인의 죄와 관련된 장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로 개정하였으나 형식적인 개정에 그쳐 실제로 인신매매의 정의규정도 없고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 부속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법안과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들

① 사회적 인식과 문화 개선

한편 법정책만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성문화 개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여성인권의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시민인 주변인, 목격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② 여성인권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내실화

현재 공공기간과 학교 등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 방교육을 각1시간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4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1시간에 강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렇게 통합교육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것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하는 강사들의 교육커리큘럼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실에 발딛고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강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이 함께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생생한 교육이 될 것이다.

③ 여성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과 예산 구조 마련

현 정부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4대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각 부처별로 이

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신설,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업무와 사업이 분산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인권을 다루는 권익증진국은 현재의 상담소 지원부서가 아닌 반여성폭력 혹은 여성인권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성매매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예산도 여성발전기금 예산으로 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은 민간 위탁 상담소와 쉼터를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또한 불안정한 기금운영을 통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예산마저 단순비교 했을 때 가해자교정치료예산이 가정폭력피해자지원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여성인권 진흥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서체계와 예산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④ 담론의 변화를 위한 운동의 필요성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제적 프레임 담론에서 대안적 담론을 제안할 때만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성매매는 성적 착취의 문제로 재정의 하여 알선과 수요가 성매매 증가의 실질적 원인임을 법률과 정책에서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 변화가 법개정과 실행,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6. 나가며

지금까지 여성인권의 개념과 대표적인 여성인권분야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의 현황에 대해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의 인권분 야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여성회가 창립했던 1988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라는 용어는 세상에 없었다. 그 지난 한 세월동안 여성운동은 뜻과 의지를 모아 담론을 만들고 사회의식을 변화시키고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사회와 일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다. 그 성과로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낯설게 느끼지 않게 되었고, 가부장적이라던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일상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선배들의 노고에 머리가 숙여진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여성인권 분야는 논의할 지점이 별로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을살아가다.

참고문헌

주재선 「국제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2014 가을호 젠더리뷰』.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반성폭력 8』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

성지혜 이미원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이행점검 연구』 2013.

김혜원 장재원 『지역 일·가정 양립 현황과 대책』 2013.

『반성폭력 6』『반성폭력 5』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대구여성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자료집』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통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13년.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성폭력에 맞서다』한울 2009.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2006.

김동춘 한흥구 조효제 엮음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 정희진 「'여성' 과 '인간'을 넘어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희진 엮음 『성폭력을 다시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200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1999.